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27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

판 결

사 건 2013가단6090 청구이의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14. 7. 25.

판 결 선 고 2014. 9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 대한 피고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작성의 증서 2012년 제16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고만 한다)에 기한 금 7,000만 원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

원고는, 2012. 2. 중순경 원고의 매형인 소외 C와 피고의 아들인 소외 D가 원고를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27

찾아와 원고에게 "문경에 펜션을 임차하는데 은행권 대출받은 게 있는데, 피고가 걱정을 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 걱정말고, 1,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데 보증인이 되어 달라."고 말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위 D가 제시하는 공증촉탁 위임장의 위임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도장 날인을 한 후, 원고가 기재한 부분 이외의 다른 기입란은 모두 공란인 채,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는데, D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금액란에 당초 약정과 달리 '7,000만 원'으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상 채무 중 4,000만 원을 갚으라고 변제독촉을 하였는바,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D의 기망에 의한 원고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인바,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바이므로, 그에 따라 위 공정증서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, 피고의 위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2. 판 단

살피건대,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위하여 공증촉탁 위임장의 위임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기입란은 모두 공란인 채 위 D에게 교부하였고,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일자, 변제기한, 금액란은 모두 위 D가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위 C는 2012. 1경 소외 E에게서 문경시 F 소재 펜션을 보증금 5,000만 원에 임차하였고, 피고는 위 D를 통하여 위 임차보증금 5,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피고는 위 5,000만 원 이외에도 위 C에게 펜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27

(위 C도 위 D에게서 6,2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),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액은 피고가 C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의 수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원고의 매형인 위 C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채무금액이 7,000만 원으로 기재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위 D를 잘 알지 못하였던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, 그러한 원고가 공정증서상 채무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약정근거도 남기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D에게 일임하여 작성하게 한다거나,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그 금액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, 피고 또는 D의 변제독촉이 있자 그제서야 채무금액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원고가 D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.

결국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,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,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27

판사 김낙형